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00

발의연월일: 2021. 1. 27.

발 의 자: 강훈식 · 김성환 · 김영배

송갑석 · 신정훈 · 유동수

이광재 • 이소영 • 이용빈

장철민 · 전혜숙 · 허 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온라인 매출비중(49.3%)은 오프라인 매출비중(50.7%)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이렇듯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·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,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,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한 상황임.

이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 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,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를 내용으로 별도 장을 신설함(제3장의2 신설).
- 나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 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(안 제15조의2 신설).
- 다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음(안 제15조의3 신설).
- 라.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의 전문성 및 정책 타당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(안 제15조의4 신설).
- 마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 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고, 관련된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의 5부터 제15조의7까지 신설).
- 바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 화를 지원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 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17조).
- 사.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(안 제21조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장의2(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의2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

- 제15조의2(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
 - 2.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
 - 3.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
- 4.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3(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설치)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전담조직에 관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의4(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

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(이하 "민간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1.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
- 2.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
- 3. 그 밖에 디지털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 하는 사항
- ②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.
- 1.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의5(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) ①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(이

- 하 "플랫폼"이라 한다)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1. 플랫폼 구축 및 운영
- 2.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
- 3. 플랫폼 관련 기술 · 서비스 개발 촉진
- 4.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
- 5.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데이터 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·제7항, 제48조,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: 국세청장
 - 가.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
 - 나.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
 - 다. 개업일 · 휴업일 및 폐업일
-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6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: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그 밖의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민간기업체의 장

- 3.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: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·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민간기업체의 장
- 4. 그 밖에 지역별 인가·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, 사업장의 종사자 수, 지역별 인구정보,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,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: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,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
- ③ 플랫폼의 구축·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(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)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의6(데이터 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) ① 제15조의5에 따른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누구든지 제15조의5에 따른 플랫폼 관련 데이터 등을 가공, 분석, 이용, 제공 등의 방식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

- 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데이터 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데이터 등을 사용・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데이터가 분실・도난・유출・위조・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,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・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 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.
- 제15조의7(플랫폼 활용 촉진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5에 따른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·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데이터 공유
 - 2.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
 - 3.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내용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5항제4호 중 "데이터베이스"를 "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,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의2.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

① 공단은 제5항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	제3장의2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
		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
<u><신 설></u>		제15조의2(소상공인 디지털화 지
		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
		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
		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
		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
		<u>있다.</u>
		1.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
		신모델 확산
		2.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
		3.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
		4.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
		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<u> <신 설></u>		제15조의3(소상공인 디지털 전환
		전담조직의 설치) ① 중소벤처기
		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
		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
		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
		<u>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</u> ① 게1하이 거다고지에 과하 서
		② 제1항의 전담조직에 관한 설 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		지 못 눈성 등에 필요만 사성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	제15조의4(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
<u> </u>		<u> </u>

원회의 설치) 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 관 소속으로 디지털전환민간자문 위원회(이하 "민간자문위원회"라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
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
 적 평가 및 보완대책
- 3. 그 밖에 디지털 전환사업과 관 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
- ②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.
- 1.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 인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추천하

<신 설>

는 사람

- 3.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의5(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 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) 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 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 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 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(이하 "플랫폼"이라 한다)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에 관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 - 1. 플랫폼 구축 및 운영
 - 2.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
 - 3. 플랫폼 관련 기술·서비스 개 발 촉진
 - 4.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<u>제도 개선</u>
 - 5.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데이터 등"이라 한다)의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 및 제7항, 제48조,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: 국세청장

<u>가.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 및</u> <u>매출액</u>

나.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. 개업일·휴업일 및 폐업일 2.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64조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관 한 정보: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그 밖의 관계 기관·법인·

단체 • 민간기업체의 장

- 3.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: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 및 제18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・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・법인・단체 기관・법인・단체 기관・법인・단체 기관・업체의 장
- 4.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, 사업장의 종사자 수, 지역별 인구정보, 소 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 이터,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🛭 제2 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 의 구축・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 는 정보: 해당 자료 또는 정보 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 공기관의 장, 관계 기관 · 법인 •단체의 장, 그 밖의 관계 민 간기업체의 장
- ③ 플랫폼의 구축・운영 업무를

<신 설>

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 (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) 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의6(데이터 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) ① 제15조의5에 따른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이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누구든지 제15조의5에 따른 플랫폼 관련 데이터 등을 가공, 분석, 이용, 제공 등의 방식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데이터 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 데이터 등을 사용・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

<신 설>

성을 확보하고 해당데이터가 분 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며,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 다.

제15조의7(플랫폼 활용 촉진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5에 따른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·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<u>1. 데이터 공유</u>
- 2.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 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
- 3.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 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 의6에 따른 내용을 효율적으로

제17조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) ① ~ ④ (생 략)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<u>데이</u> 터베이스 구축·운영

5. ~ 13. (생 략) <신 설>

14. (생 략) ⑥ ~ ⑨ (생 략) <신 설>

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관협 의체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 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17조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 설립 등) ① ~ ④ (생 략) 립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- (5) ------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<u>소상</u> 공인 빅데이터 플랫폼, 상권정 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----
- 5. ~ 13. (현행과 같음)
- 13의2.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 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
- 14. (현행과 같음)
- ⑥ ~ ⑨ (현행과 같음)
- ① 공단은 제5항제13호의2에 해 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·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-----
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의2.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
7. ~ 23. (생 략)	7. ~ 2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